

2024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추가 공고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24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일부지역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I 사업목적

-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II 사업개요

- 추가 공고 대상 : 아래 일선기관 관할지역 소재 사업장(설치 소재지 기준)
 - 일선기관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 명단 이외 지역은 보조금 기 지원 결정 사업장의 신청 취소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접수 (신청가능 여부문의 : 1644-8845, 별첨2 참조)

신청가능 일선기관 (공고일 기준)	관할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전북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북서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신청가능 일선기관 (공고일 기준)	관할지역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 지원품목

- 허가대상 · 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조리부산물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3페이지 '지원품목' 정보 참조)
- 다만, 급·배기 환기장치는 해당 설비에 대한 일선기관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접수 가능여부는 관할 일선기관에 별도 문의 : 1644-8845)
※ 환기장치 유형 별 예산규모는 연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4. 3. 11.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별첨2 참조)

○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신청서류 다운로드 경로】

☞ 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 → 공지사항

※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우편 접수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수취일시를 기준으로 처리

III 지원내용

○ (한도액)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은 최대 2천5백만원)

○ (지원비율)

신청 대상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참여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지원제외 대상】

- ❶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❷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❹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지원품목)

지원 품목	품목 조건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설비전체를 신규·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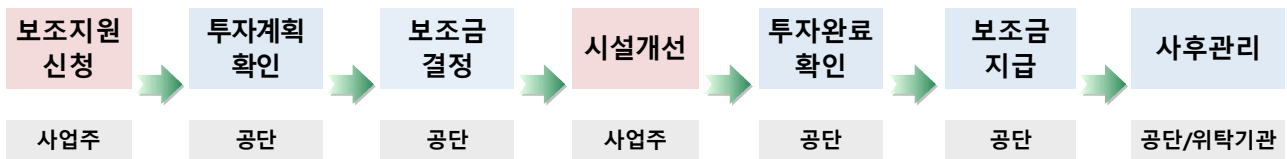
※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 현황,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

○ (지원조건)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 부산물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W-26-2023)」에 준하여 설치
 -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공사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공단 보조지원 가능금액 판단

IV 세부 추진절차



- ① (보조지원신청) 사업장 소재 공단 일선기관을 통하여 신청서 제출(사업주)
-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공단 누리집(kosha.or.kr) 게시(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공지사항)

제출 서류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⑧ 설계근거, 도면(계통도 등) 등
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⑩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주) 사업주가 원할 경우 공사원가계산서(제작원가계산서)를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 가능

- ②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공단)
- ③ (보조금 결정)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공단)
- 보조금 결정
 -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보조지원 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나 사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투자완료) 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공사(제작)품 보조지급 산정기준(별첨1) 참조]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결정 및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가능하며 별첨1에 따라 보조금 지원가능금액 결정

-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 보조금 선지급(필요 시)

-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열악한 사업장을 돕기 위해 지원결정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 시 보조금 일부(지원결정금액의 70% 이내) 선지급
- 제출서류

-
-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첨부 서식모음 참조)
 - ②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1부
 - ③ 입금 신청통장 사본(사업주) 1부
 - ④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 보험기간: 약정일(선지급 요청일 이전날짜. 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가입금액: 결정된 보조금액 전체
-

④ (시설개선)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공사(사업주)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
- 공사업체,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

⑤ (투자완료 확인)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사업주)

구 분
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②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③ 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④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⑤ 공사(제작)원가(검토)보고서
⑥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⑦ 지급보증보험 증권
⑧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⑨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⑪ 사업자등록증
주) 자금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은 경우 ④ 생략

※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지급보증보험 증권>

-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4. 5. 13. (지급보증기간: 4년)
보험기간: '24. 5. 1. ~ '27. 4. 30.
- ▶ 피보험자는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로 함
- ▶ 지급보증보험 가입 문의처: 관할 지역 SGI서울보증보험

- 공단은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여부 확인
- 공사품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공사(제작)품 보조지급 산정기준(별첨) 참조]
- 설비 설치 장소,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 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

-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부가세 포함)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을 제출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

⑥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확인 이후 1~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공단)

⑦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사후관리 실시(3년)

V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사업장의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발생할 수 있음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지원 부정수급 금지】

-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물품 판매 또는 공급업체(공사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금지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보조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VI 기타사항

-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당해연도 공단 보조사업(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사업 등)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대상에서 제외

※ 단, 타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청 가능

- 문의처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별첨 1. 공사(제작)품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2. 문의 및 접수처

별첨1

공사(제작)품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1. 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보조금 지급요청 시)

-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도면, 세부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고, 보조금 지급(투자완료확인)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원가계산용역기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를 충족하는 업체: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

** 견적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가격(공단 판단금액)으로 산정(단,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

- 원가계산전문기관을 통한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부가세 제외) 중 일부를 소요금액으로 인정[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세금계산서(증빙자료)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

■ 공사(제작) 소요금액별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공사금액 (소요금액)	4천만원 미만	4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공단)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예시)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환기장치 공사금액 5,000만원인 경우
(총 소요금액) 5,000만원(공사금액) + 60만원(보고서 작성비용 최대 인정금액) = 5,060만원
(보조확정금액) 5,060만원(공단판단금액)×70%(보조비율) = 3,542만원

2. 공사(제작)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보조금 신청 시)

-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6.16.)에 따라 작성한 공사(제작)원가계산서 적용

- 제출한 공사(제작)원가 계산서 금액의 80%*를 보조지급 기준가격(공단 판단금액)으로 산정

* 공단 연구용역 및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산정한 공단 보조금 지급가격 산정기준

- 원가계산서 작성 비용 일부(부가세 제외)을 소요금액으로 인정[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세금계산서(증빙자료)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

■ 공사(제작) 소요금액별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공사금액 (소요금액)	3천만원 미만	3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원가계산 작성비용 인정금액(공단)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예시)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공사금액 2,000만원인 경우
(총 소요금액) 2,000만원(공사금액) + 50만원(원가계산 비용 최대 인정금액) = 2,050만원
(공단 판단금액) 2,050만원×80%(가격산정기준) = 1,640만원
(보조확정금액) 1,640만원(공단판단금액)×70%(보조비율) = 1,148만원

별첨2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접수처

권역	연번	일선기관명	연락처	주소	관할지역
서울	1	서울광역본부	02-6711-2831	(04512)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7층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	서울동부지사	02-2086-8025	(05836)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3	서울남부지사	02-6924-8734	(0725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8층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	강원지역본부	033-815-1043	(24436)강원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5	강원동부지사	033-820-2512	(25512)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부산	6	부산광역본부	051-520-0616	(46274)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곡동) 4~7층	부산광역시
	7	울산지역본부	052-226-0533	(44713)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울산광역시
	8	경남지역본부	055-269-0524	(5143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9	경남동부지사	055-371-7562	(50635)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4층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광주	10	광주광역본부	062-949-8754	(6236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11	전북지역본부	063-240-8561	(5501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12	전북서부지사	063-460-3643	(54001)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13	전남지역본부	061-288-8737	(58566)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 개발공사빌딩 7층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14	전남동부지사	061-689-4931	(59640)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15	제주지역본부	064-797-7522	(63217)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연번	일선기관명	연락처	주소	관할지역
인천	16	인천광역시본부	032-510-0566	(21417)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인천광역시
	17	경기중부지사	032-680-6545	(1454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18	경기북부지사	031-828-1965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19	고양파주시사	031-540-3822	(10390)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경기	20	경기지역본부	031-259-7158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0층, 13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의 경우 경기남부지사(평택 소재, '24년 신설)로 담당기관 변경 예정
	21	경기서부지사	031-481-7520	(1546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2층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22	경기동부지사	031-785-3324	(1355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대구	23	대구광역시본부	053-609-0546	(41936)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24	대구서부지사	053-650-6857	(42661)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5층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25	경북지역본부	054-478-8033	(39390)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26	경북동부지사	054-271-2022	(37822)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대전세종	27	대전세종광역시본부	042-620-5634	(34122)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28	충북지역본부	043-230-7142	(28393)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가경동) KT 3층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29	충북북부지사	043-849-1033	(27478)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30	충남지역본부	041-570-3425	(31169)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3층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